포럼 25-02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제1차 포럼
##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포럼 25-02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제1차 포럼

##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포럼 25-02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 일시: 2025년 4월 29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회의실 2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 공동주최

| 시간 | 내용 | 비고 |
|---|---|---|
| 14:00~14:10 | 발표자 및 참석자 소개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 연구센터 센터장) |
| 14:10~14:50 |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청년의 체류자격 현황과 주요 이슈 |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 14:50~15:00 | 휴식 | |
| 15:00~15:30 | 이민자를 위한 지역정착 비자의 현황과 한계 | 박민정(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 |
| 15:30~15:45 | 토론 1 |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
| 15:45~16:00 | 토론 2 | 강슬기(의정부 EXODUS 활동가) |
| 16:00~17:00 |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 참석자 전원 |

차 례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Ⅰ 제1차 포럼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포럼 25-02


**제1절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청년의 체류자격 현황과 주요 이슈** ····· 1

**제2절 이민자를 위한 지역정착 비자의 현황과 한계** ····· 10

## 제1절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청년의 체류자격 현황과 주요 이슈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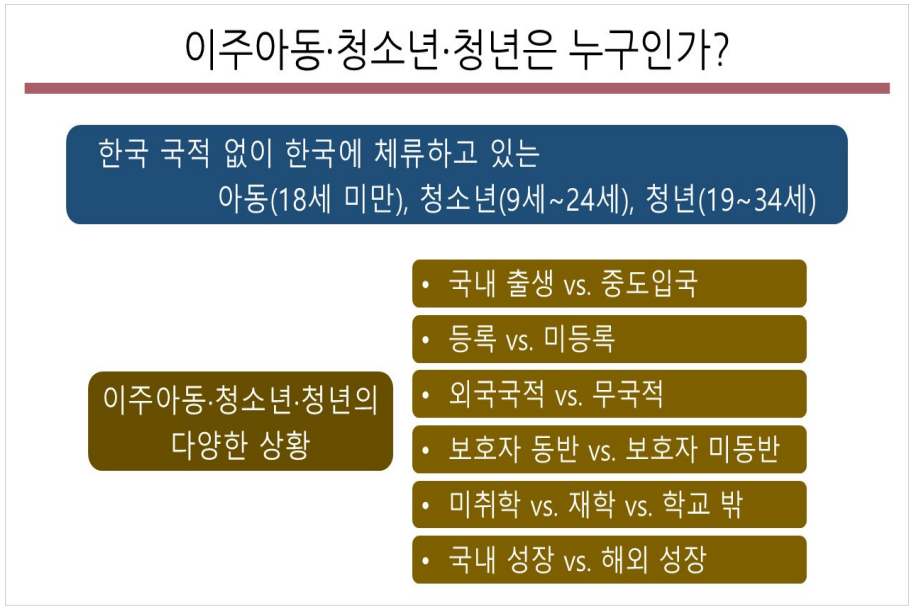

# 이주아동 관련 통계

| | 법무부 (2023.12.31.) | 행정안전부 (2023.11.1.) | 교육부 (2023.4.1.) |
|---|---|---|---|
| 이주민 전체 | 2,507,584명 (체류외국인) | 2,459,542명 (외국인주민) | N/A |
| 이주아동 | 210,302명 (미등록: 6,169명) | 289,886명 | 181,178명 (외국인가정: 40,372명) |
| 대상 | 19세 이하 | 18세 이하 | 초·중·고 재학생 |
| 포함 | 출입국 기록 또는 외국인등록 기록이 있는 아동 | 귀화한 부모의 자녀 및 외국인-한국인 부모의 한국인 자녀 |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출생,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
| 제외 | 한국에서 출생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이주아동 |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자가 아닌 이주아동 |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아동 |

#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Young People with Foreign-born Parents

- OECD와 European Commission이 공동으로 출간해온 이민자 통합지표(2012년, 2015년, 2018년, 2023년 발표)는 OECD 국가들의 이민자 및 이민자 자녀의 사회통합을 80여 개의 지표를 통해 비교
- 이민자 통합지표에는 외국 출생 부모를 둔 젊은이들(15~34세)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챕터가 별도로 존재 (교육, 보육, 문해력, 학업성취, 학력, 취업, 실업, 빈곤 등의 지표)
- 이민자 통합지표는 외국 출생 부모를 둔 젊은이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a) 본인은 해당 국가 출생, 부모 모두 외국 출생
  b) 본인은 해당 국가 출생, 부모 중 한 쪽은 해당 국가 출생, 다른 쪽은 외국 출생
  c) 외국 출생으로 15세 이전에 해당 국가로 이주
  d) 외국 출생으로 15세 이후에 해당 국가로 이주 (이 경우는 비교에서 제외)

➡ 한국은 관련 통계 부재로 이주배경 청년의 통합지표 비교에서 다뤄지지 않음

# 이주민의 신분, 체류자격

**체류자격**

국내 체류 목적에 따라 부여.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 타 체류자격 변경, 가족 동반, 활동범위, 사회보장 접근성 등이 결정

**8개 대분류**

**37개 중분류**

**280여 세부분류**

| | |
|---|---|
| | A-1(외교), A-2(공무), A-3(협정) |
| 단기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
| 단기 |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
| 장기 |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
| 장기 |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
| 장기 |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
| 장기 | G-1 (기타) |
| 장기 | H-1 (관광취업), H-2(방문취업) |

# 이주아동·청소년의 미성년기 체류자격

| 체류자격 | 세부분류 |
|---|---|
| 일반연수(D-4) | D-4-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초청 장학생,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 * 법무부 체류자격 부여 조치 D-4-8: 국내 출생 재학아동, D-4-9: 영유아기 입국 재학아동, D-4-10: 영유아기 이후 입국 재학아동 |
| 방문동거(F-1) | F-1-8: 합법체류자의 국내출생자녀, F-1-9: F-4의 미성년자녀(미취학), F-1-9R: F-4-R의 미성년자녀, F-1-11: H-2의 미성년자녀(미취학), F-1-12: F-2의 미성년자녀, F-1-14: 입양된 미성년 외국인, F-1-16: 난민인정자의 미성년자녀, F-1-52: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 F-1-71: 국적신청자의 미성년자녀, F-1-72: 영주자격 신청자의 미성년자녀, F-1-99: 기타 동거, F-1-R: F-2-R의 미성년자녀 |
| 동반(F-3) | F-3-1R: F-2-R의 미성년자녀(이하 자녀), F-3-2: D-1의 자녀, F-3-2R: F-4-R의 자녀, F-3-3: D-2의 자녀, F-3-4: D-4의 자녀, F-3-5: D-5의 자녀, F-3-6: D-6의 자녀, F-3-7: D-7의 자녀, F-3-8: D-8의 자녀, F-3-9: D-9의 자녀, F-3-10: D-10의 자녀, F-3-11: E-1의 자녀, F-3-12: E-2의 자녀, F-3-13: E-3의 자녀, F-3-14: E-4의 자녀, F-3-15: E-5의 자녀, F-3-16: E-6의 자녀, F-3-17: E-7의 자녀, F-3-18: F-2의 자녀, F-3-19: F-4의 자녀, F-3-20: H-2의 자녀, F-3-74 E-7-4의 자녀, |
| 거주(F-2) | F-2-2: 국민의 미성년 자녀, F-2-3: 영주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F-2-4: 난민인정자, F-2-13: 공익사업 투자이민자의 미성년 자녀, F-2-16: 특별기여자, F-2-71: 점수우수인력의 미성년 자녀, F-2-81: 부동산 투자 이민자의 미성년 자녀 |
| 재외동포(F-4) | F-4-11: 재외동포 본인, F-4-30: 재외동포 중 초중고교 재학자 등 |
| 영주(F-5) |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미성년자녀, F-5-8: 국내 출생 재한화교, F-5-20: 영주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 F-5-22:공익사업투자자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F-5-S2: 예비 우수인재 영주의 미성년자녀 |
| 기타(G-1) | G-1-1: 산재치료 중인 자의 보호자, G-1-2: 질병, 사고 치료 중인 자의 보호자, G-1-5: 난민신청자, G-1-6: 인도적 체류허가자, G-1-12: 인도적체류허가자 가족결합, G-1-8: 국내 출생 고교졸업자, G-1-13: 영유아기 입국 고교졸업자, G-1-14: 영유아기 이후 입국 고교졸업자 |

## 이주아동·청소년이 체류자격을 잃는 경우

| | |
|---|---|
| 미등록 아동 | 부모가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고 있어 자녀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 미성년 자녀 | 체류자격이 있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로 F-1, F-2, F-3 체류자격을 받았다가 성인이 되는 경우 |
| 연장·변경 실패 |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실패하는 경우 (eg. 난민신청자로 난민신청 최종 불허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출국·학대로 체류자격을 잃는 경우) |

➡ 체류자격 취득, 변경, 연장을 위해 계속해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 과정

| | |
|---|---|
| 단속·추방 유예 | -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중학교 입학 허용 후, 재학 중인 학생을 추적해 학부모 단속 사례 급증 → 교육부, 법무부에 단속 자제 협조 요청<br>- 2006년 9월 법무부, 초등학교 재학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게 한시적 특별체류 허용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br>- 2010년 법무부,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 방안" 발표. 초·중학교 재학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 대한 단속 자제, 강제출국 유예 → 2013년 고교 재학생 및 학부모에게까지 확대 |
| 체류자격 부여 | - 2021년 4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발표 (국내 출생+15년 이상 거주,+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025.2.28.)<br>- 2022년 1월, 체류자격 신청 요건 완화 (외국 출생 포함 6년 또는 7년 이상 거주+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025.3.31.)<br>- 2025년 3월, 체류자격 부여 조치 연장 발표 (~2028.3.31.) |

## 구제대책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청소년·청년

| 구제대책 (2021.4.~2022.1.) | | 구제대책 개선안 (2022.2.~2025.2.) |
|---|---|---|
| 42명 | → | 1,205명 |

2021년 기준,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 **3,196명**

고교졸업자를 포함해 체류자격을 받은 이주아동 **총 1,247명**

→ 교육부 추산 3,200명 (재학생), 법무부 추산 3,434명 (18세 이하), 이주인권단체 추산 10,000~20,000명을 감안할 때, 70~90%은 여전히 미등록

## 성인기 이행 시 체류자격 변경의 길

### 미등록 아동

-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2021.4.~2022.1.) 또는 구제대책을 개선한 '국내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2022.2.1.~2028.3.31.)에 따라 초·중·고 재학 중 일반연수(D-4), 고교 졸업 후 기타(G-1) 체류자격 신청 가능
- 그러나 여전히 30%~90%는 조건 미충족으로 신청 하지 못하고 있음

### 등록 아동

-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 (단, 난민신청자(G-1-5)는 대학에 진학해도 체류자격 변경 불가)
- 2025년 4월 1일 전까지는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 체류자격으로는 변경 거의 불가했음. 전문 취업 (E-1~E-7)은 최소 전문학사 졸업의 학력 요구, 비전문 취업(E-9~E-10)은 국내에서 연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불가, 예술흥행(E-6) 변경은 가능하지만 재능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

# 국내 성장 이주청소년의 체류권 관련 변화 (2025.4.1.~)

## 구제대책 연장

- 2025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 고교 졸업 후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신설

-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을 할 수 있는 E-7-Y 체류자격 신설. 신청요건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 졸업(초·중·고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 이수로 대체 가능)
- 만약 바로 취업할 수 없다면 구직(D-1-1) 체류자격 신청 가능, 취업도 진학도 하지 못했으나 인도적 사유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D-10, E-7-Y로 인구감소 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F-2-R 변경 허용

# 체류자격 변경·유지의 어려움

## 유학 (D-2)

- 입학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재정능력 요구 (수도권 소재 2,000만원, 비수도권 1,600만원)
-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배제
- 시간제 취업의 업종과 취업시간 제한으로 학비 및 생활비 마련에 한계, 그러나 휴학 불가
- 학점과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체류자격 연장 불투명

## 특정활동 (E-7)

- 특정활동(E-7) 중 전문인력(E-7-1)은 주로 이공계 위주의 총 67개 업종에 전공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변경 가능, 준전문인력(E-7-2) 중 요리사는 특정 국적자 사증 발급 제한
- 고용업체는 규모와 외국인 고용비율을 맞추면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외국인의 임금 요건이 전년도 GNI의 70% 또는 80% 이상이 되어야 함
- 신설된 E-7-Y는 취업 업종에 제한 없고 임금 요건도 없지만 신청 조건에 제한이 있음

# 체류자격 변경·유지의 어려움

## 거주 (F-2-7)

- 거주 중 점수제 우수인력(F-2-7)은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해서 체류해야 신청 가능 (연소득 4,000만 원이 넘는 경우 3년 미만 체류자도 신청 가능)
- 나이, 학력, 기본소양(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연소득의 기본점수와 기타 가점·감점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서 총 170점이 넘어야 신청 가능

## 거주 (F-2-R)

- 거주 중 지역우수인재(F-2-R)는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또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D-10이나 E-7-Y로 4년 이상 체류, 전년도 GNI 70%를 충족시켜야 함 (지자체장의 추천 필요)
- 기본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경제활동 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5년 이상 체류해야 함 (거주지 제한 기간 내 타지역으로 이주 시 체류자격 취소)

# 체류자격 변경·유지의 어려움

## 영주 (F-5)

- 결혼이민자, 화교, 국민의 자녀 등 일부 이주민을 제외하고는 영주자격을 취득해야 이후 귀화가 가능함. 영주(F-5)는 이주민의 체류자격 중 가장 안정적인 체류자격으로, 활동범위 제한도 없고 체류기간의 상한도 없음
- 일반적인 이주청소년·청년이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면 일반영주(F-5-1) 또는 점수제영주(F-5-16)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해당 체류자격의 소득 요건은 전년도 GNI의 2배로 꽤 높은 편임 (2025년 4월 기준, 전년도 GNI는 약 4,995만원으로 영주 체류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연소득 9,990만원이 넘어야 함)

## 귀화

- 일단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그 정도의 조건을 맞춘 상태라면) 귀화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

# 국내 성장 이주아동들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언

## 1.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상시화, 제도화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었으나 현재의 구제대책은 상시적인 제도가 아닌 한시적 조치로 시행하고 있다는 한계 존재
- 이미 법무부는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을 통해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미등록 체류 아동에 대해 단속을 자제하고, 적발되더라도 학생과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이후에도 국내에서 공교육을 이수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고교 졸업 후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만들어 출국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동 인권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아동에게 투입된 공적 자원과 노력의 측면에서도 손실

**⇒ 현 구제대책은 지속되어야 하며, 가능한 제도화 되어야 함**

## 2. 구제대책 요건의 완화 및 개선

▪ 공교육 이수 요건 완화

- 경제적 어려움, 졸업 이후 계속될 체류 불안정, 고교 전입학 거부 등을 이유로 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아동들이 존재함.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초·중· 고 12년 중 일정 기간 이상 공교육을 이수했다면 검정고시를 통해 공교육 이수 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 범칙금 추가 감면 적극 시행

- 부모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감당할 수 없어 체류자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 발표한 대로 범칙금의 추가 감면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거나, 범칙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

▪ 부모의 출국에 대한 유예 기간 부여

-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되었다고 바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최소한 청소년(~24세)인 동안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배려

## 3. 국내 정착을 위한 징검다리 체류자격 신설

- 2025.3.20.에 발표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취업·정주 방안" 에도 여전히 한계 존재
- 18~24세라는 연령 제한, 18세 이전 7년 이상 국내 체류 및 국내 초·중·고교 졸업이라는 조건은 여전히 많은 이들을 배제시킴
-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구직, 또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예정이나 여전히 다른 이주민들과 유사한 기준으로 취업-거주-영주의 단계를 밟아야 함
- 인구감소 문제로 매년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유치 규모를 늘리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많은 예산을 채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미 사회통합이 다 되어 있고 정착의 의지가 높은 이주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를 통한 정착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역설적

⇒ **활동범위에 제한이 없고, 이후 완화된 조건으로 영주 체류자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체류자격(F-2-Y)을 신설할 것을 제안**

## 제2절 이민자를 위한 지역정착 비자의 현황과 한계

박민정(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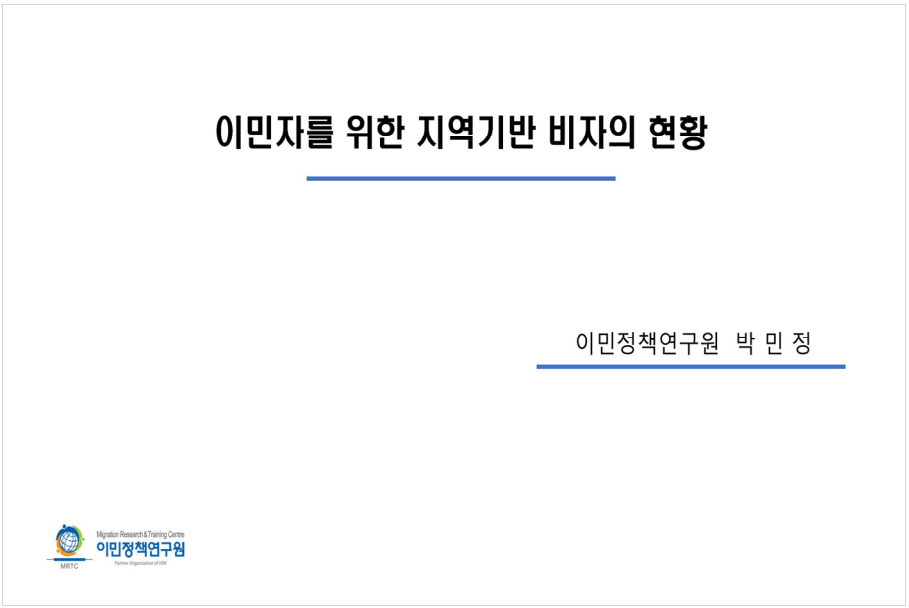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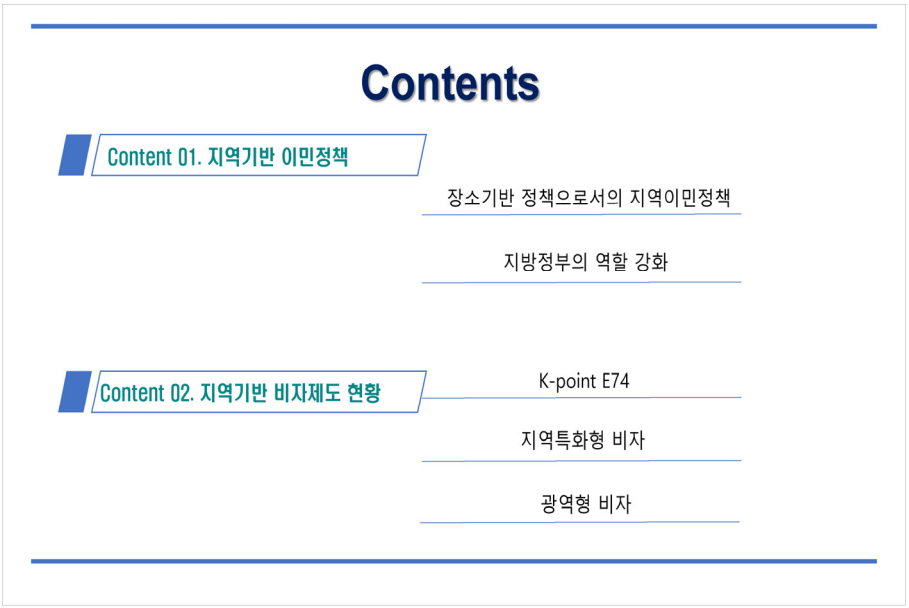

# 1. 지역 기반 이민정책

· 장소기반 정책으로서의 지역 이민정책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 지역 기반 이민정책

##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으로서의 지역이민정책

### ▶ OECD Regional Outlook(지역전망)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 국가내 지역간 생산성 불균형의 문제에 대응할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 촉구
- OECD 국가의 1/3은 국가 전체 생산성 증가가 단일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한국)
- 지역의 특장점을 살린 장소기반 경제정책 개발 요구

### ▶ 장소기반 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성

- 이민자는 지역 평균보다 젊은 경향이 있어 고령화를 완화시킴
- 지역의 정책적 수요에 따라 공급(규모) 조절이 가능함
- 지역의 신규 투자자가 될 수 있음
- 유럽국가들의 적극적 이민자 유치 사례 (유학생 유치, 창업 투자)

### ▶ 미래 수요에 맞춘 다층적 · 혁신적 거버넌스 구축

- 도시화, 고령화, 이주를 포함한 인구변화에 민감할 것

* 출처: OECD Regi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2019. OECD Regional Outlook 2019 : LEVERAGING MEGATRENDS FOR CITIES AND RURAL AREAS.

# 지역 기반 이민정책

##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으로서의 지역이민정책

| 지역 | 전체 | 비전문 취업 | 방문 취업 | 전문 인력 | 유학생 | 거주 | 재외 동포 | 영주 | 결혼 이민자 | 기타 |
|---|---|---|---|---|---|---|---|---|---|---|
| | | E9 | H2 | E1~E7 | D2 | F2 | F4 | F5 | F6 | |
| **총계** | **2,042,017** | **328,114** | **91,818** | **85,955** | **178,107** | **61,039** | **553,664** | **202,738** | **146,672** | **393,910** |
| | ***100.0*** | ***16.1*** | ***4.5*** | ***4.2*** | ***8.7*** | ***3.0*** | ***27.1*** | ***9.9*** | ***7.2*** | ***19.3*** |
| 서울 | 413,317 | 3,130 | 25,567 | 14,697 | 63,328 | 15,193 | 147,773 | 51,045 | 22,367 | 70,217 |
| | *100.0* | *0.8* | *6.2* | *3.6* | *15.3* | *3.7* | *35.8* | *12.4* | *5.4* | *17.0* |
| 인천 | 132,766 | 14,664 | 5,777 | 3,512 | 5,460 | 5,789 | 43,637 | 19,601 | 10,901 | 23,425 |
| | *100.0* | *11.0* | *4.4* | *2.6* | *4.1* | *4.4* | *32.9* | *14.8* | *8.2* | *17.6* |
| 경기 | 706,858 | 120,561 | 43,263 | 21,621 | 28,564 | 21,309 | 239,460 | 86,777 | 45,019 | 100,284 |
| | *100.0* | *17.1* | *6.1* | *3.1* | *4.0* | *3.0* | *33.9* | *12.3* | *6.4* | *14.2* |
| 대전 | 29,629 | 1,260 | 437 | 1,503 | 9,302 | 794 | 3,380 | 1,633 | 2,985 | 8,335 |
| | *100.0* | *4.3* | *1.5* | *5.1* | *31.4* | *2.7* | *11.4* | *5.5* | *10.1* | *28.1* |
| 충남 | 130,880 | 30,040 | 5,393 | 3,998 | 8,574 | 3,003 | 34,193 | 9,239 | 8,121 | 28,319 |
| | *100.0* | *23.0* | *4.1* | *3.1* | *6.6* | *2.3* | *26.1* | *7.1* | *6.2* | *21.6* |
| 경북 | 87,465 | 22,347 | 1,701 | 3,449 | 10,930 | 1,802 | 10,697 | 3,312 | 7,266 | 25,961 |
| | *100.0* | *25.5* | *1.9* | *3.9* | *12.5* | *2.1* | *12.2* | *3.8* | *8.3* | *29.7* |
| 전남 | 61,238 | 22,070 | 538 | 3,261 | 3,518 | 694 | 4,049 | 2,058 | 5,752 | 19,298 |
| | *100.0* | *36.0* | *0.9* | *5.3* | *5.7* | *1.1* | *6.6* | *3.4* | *9.4* | *31.5* |
| 제주 | 31,501 | 4,766 | 399 | 4,589 | 1,048 | 2,519 | 3,511 | 3,639 | 2,641 | 8,389 |
| | *100.0* | *15.1* | *1.3* | *14.6* | *3.3* | *8.0* | *11.1* | *11.6* | *8.4* | *26.6*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12. 등록외국인통계 / 거소신고 통계.

# 지역 기반 이민정책

## 지방정부 역할 강화

###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조응하는 지역 이민정책

| 정책영역 | 추진 과제 | 이민정책의 특성 | 역할 |
|---|---|---|---|
| 경제 | 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이민관리 시스템 구축<br>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br>③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br>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 유입 및 체류 관리 | 중앙 + 지방 |
| 안전 | 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br>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br>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 출입국·체류 관리 | 중앙 |
| 통합 | ① 질적으로 향상된 체계적인 사회통합 실현<br>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br>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br>④ 역사적 유대에 기반한 공생 성장 | 사회통합 | 중앙 《 지방 |
| 인권 | ① 실질적이며 다각적인 이민자 인권보호<br>② 사각지대 없는 세밀한 안전망 확보<br>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 사회통합 | 중앙 〈 지방 |
| 협력/인프라 | ① 범정부가 협력하는 이민행정 추진체계 구축<br>② 정책수요자와 소통하는 이민행정 수립<br>③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행정 서비스 과학화<br>④ 선진 국격에 부응하는 국제사회 협력 강화 | - | 중앙 + 지방 |

▶핵심 정책적 쟁점

① 인구위기 대응 유형별 인력 수급 방안

② 지방대학 위기와 연계한 지역 우수인재 확보 방안

③ 이민자 정주화 유도를 위한 사회통합 방안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2023. 12. 31. 보도자료.

# 지역 기반 이민정책

## 지방정부 역할 강화

### 신(新) 출입국 · 이민정책

▶ **목표**

- 주력산업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
- 지역기반 이민정책 고도화
- 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한 사회갈등 최소화

▶ **주요 정책과제**

①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 새로운 비자제도를 통한 우수인재의 선제적 확보

② **지자체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 및 광역형 비자 도입 등 지역 경제 활력 제고

③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 지역의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 촉진

④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를 통한 유입의 선별 기능 강화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2024. 9. 26. 보도자료.

# 지역 기반 이민정책

## 지방정부 역할 강화

〈표〉 연도별 취업 체류자격과 정주형 체류자격 외국인 규모(12.31. 기준)

| 구분 | | 2011 | 2015 | 2019 | 2021 | 2023 |
|---|---|---|---|---|---|---|
| 취업 체류자격 | 전문인력(E1~E7) | 47,774 | 48,607 | 46,581 | 45,143 | 68,643 |
| | 비숙련인력(E8~E10, H2) | 547,324 | 576,522 | 520,680 | 361,526 | 399,938 |
| | ***소계*** | ***595,098*** | ***625,129*** | ***567,261*** | ***406,669*** | ***468,581*** |
| 정주형 체류자격 | 거주(F2) | 138,418 | 38,881 | 43,403 | 42,367 | 53,056 |
| | 재외동포(F4) | 136,702 | 328,187 | 459,996 | 478,442 | 533,295 |
| | 영주(F5) | 64,979 | 123,255 | 153,038 | 168,118 | 185,213 |
| | 결혼이민(F6) | - | 128,879 | 129,200 | 134,285 | 140,161 |
| | ***소계*** | ***340,099*** | ***619,202*** | ***785,637*** | ***823,212*** | ***911,725*** |

❖ 정주형 이민자 증가에 따른 노동인력 정책에서 통합정책으로 이민정책 관점의 변화 → 지역정부 역할 강화

# 지역 기반 이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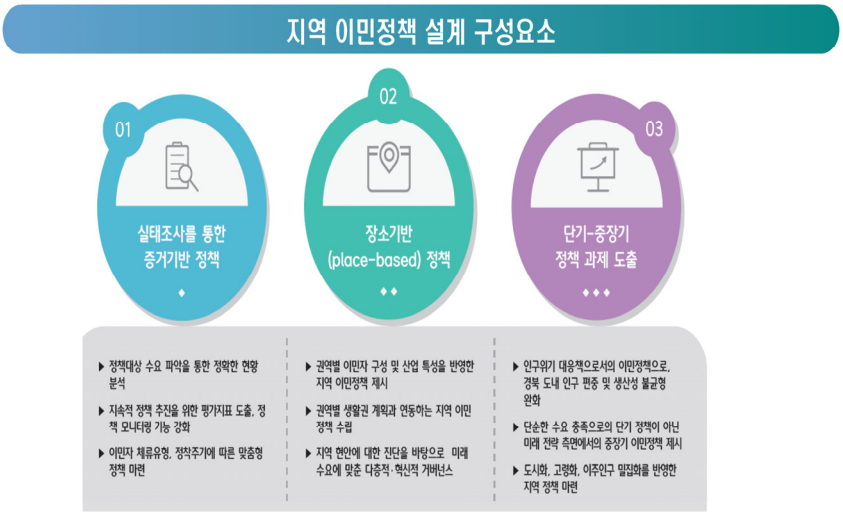


# 2. 지역기반 비자제도 현황

- K-point E74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광역형 비자제도

# 비자제도 체계

## 체류자격 변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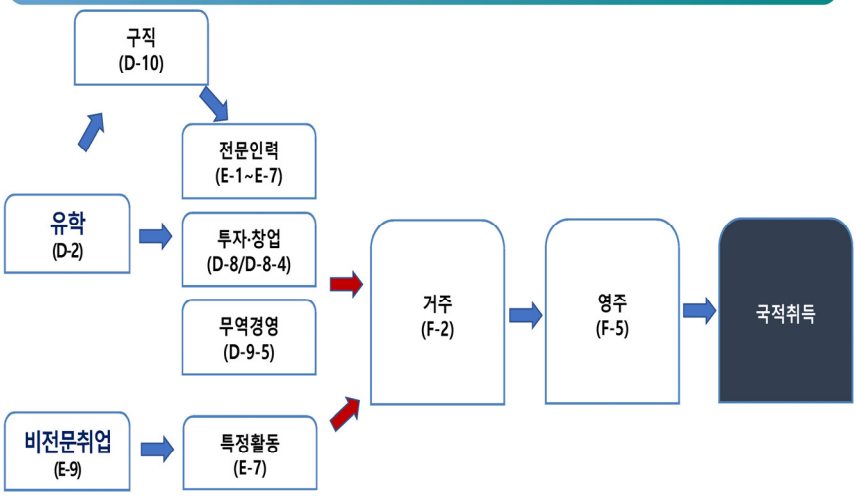


# K-point E74

## 비자 개요

- 연간 쿼터 ('22) 2,000명 → ('23) 35,000명 확대
- 기본항목 간소화,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 의무화, 변경 후 2년 간 현 직장 근무 의무화(안정성 확보)

**K-point E74 주요 내용<개선사항>**

| | | |
|---|---|---|
| 연간 쿼터 | 2,000명 | 35,000명 |
| 추천권자 | 중앙부처 | 중앙부처 + 지자체, 기업체 |
| 점수 항목 | 11개 | 기본항목을 소득, 한국어능력, 연령 3개로 간소화 |
| 신청방식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 허용) |
| 변경 후 직장 이동 | 직장 이동 허용 | 2년간 현재 직장 근무 의무화 |
| 한국어 능력 | 선택사항 | 필수사항 |
| 근무 중인 기업 추천 | 규정 없음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 의무화 |
| 사업장별 허용 인원 | 국민고용 인원 20% 이내 (뿌리산업 등은 30% 이내) | 국민고용 인원 30% 이내 (뿌리산업 등은 50% 이내)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9. 25.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 보도자료.

# K-point E74

## 주요 요건 _ 기업체

☑ **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중인 사업장

☑ **고용 허용인원 기준**

(원칙) 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내국인 근로자 수의 30% 이내

(특례) 뿌리기업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는 고용 중인 내국인 근로자 수의 50% 이내

※ 단,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은 최소 1명 고용 허용 (뿌리기업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업체는 2명)

☑ **고용 기업 추천 기준**

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상시근로자(내·외국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천 가능

※ 단,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은 최소 1명 추천 가능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K-point E74

## 주요 요건 _ 외국인

☑ **대상자 :**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4년 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 **요건 :** 1 ~ 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자
2.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3. 점수제 기본항목에서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최소 점수 이상인 자로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K-point E74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대상자 요건 (① + ② + ③ + 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 평균소득 및 Ⓑ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 (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가점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최근 10년 이내)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최근 10년 이내)

④ 불법체류 경력자 (최근 10년 이내)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점수표

### Ⓐ 평균소득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 구분 | 2,600만원 이상* | 3,5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
| 배점 | 50 | 80 | 120 |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 Ⓑ 한국어능력 : 최대 120

| 구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
| 배점 | 50 | 80 | 120 |

TOPIK(2급·3급·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이상)

### Ⓒ 나이 : 최대 60점

| 구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
| 배점 | 40 | 60 | 30 | 10 |

| 추천 | | | ③ | ④ | ⑤ | ⑥ |
|---|---|---|---|---|---|---|
| ① 중앙부처 | ① 광역지자체 | ② 고용기업체 |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연구개발소재지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국내 운전면허증 |
| 30 | 30 | 50 | 20 | 20 | 20 | 10 |

①~④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해당 연장)

| 검점 항목 | 1회 | 2회 | 3회(이상) |
|---|---|---|---|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 5 | 10 | 20 |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 5 | 10 | 15 |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경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 5 | 10 | 15 |

# K-point E74

## 광역자치단체 추천

- **대상**
  '고용기업 추천자' 중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
  ※ 해당 외국인은 2년 간 광역지자체에서 계속 체류해야 함

- 17개 광역지자체 중 추천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가 추천
  - 산하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취합해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 추천은 직종(영역)에 상관없이 E-7-4 전환 가능 영역 추천
-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자체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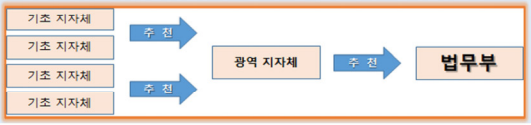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사업개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인구감소 지역 외국인 주민 확보**와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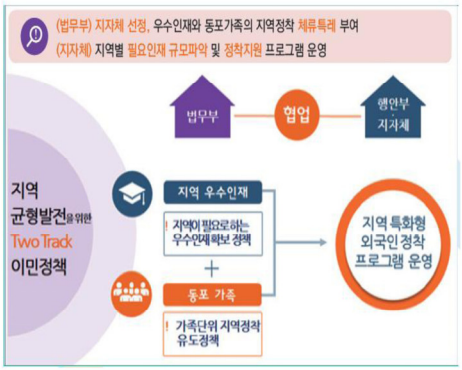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2022. 7. 25.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사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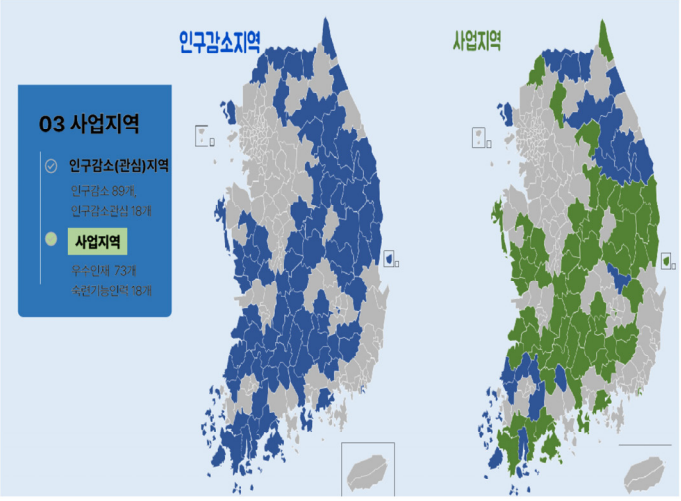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사업지역

| 구분 | 인구감소지역(89개)<br>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2021. 10. 19) |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
|---|---|---|
|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 금정구, 중구 |
| 대구(3) | 남구, 서구, 군위군 | |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동구 |
| 광주 | | 동구 |
| 대전 | | 대덕구, 동구, 중구 |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동두천시, 포천시 |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사업지역

| 구분 | 인구감소지역(89개)<br>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2021. 10. 19) |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
|---|---|---|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익산시 |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 경북(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주시, 김천시 |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사천시, 통영시 |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발급 규모

- 2023년

  : 89개 시군구 중 28개 지역 선정 시범사업 실시(1차 쿼터: 850명, 2차 쿼터: 650명)

  - 1차 : 충남(보령, 예산), 전북(정읍, 남원, 김제), 전남(영암, 해남, 장흥, 강진), 경북(영주, 영천, 의성, 고령), 경기 연천, 경남 고성
  - 2차 : 부산(서구, 동구, 영도구), 충북(제천, 단양), 전북(순창, 고창, 부안), 전남(고흥, 보성), 경북(성주), 대구 남구, 경기 가평

- 2024년

  : 89개 시군구 중 66개 지역 선정, 3,291명

  - **부산(3)**, 대구(2), **경기(2)**, **강원(2)**, **경북(15)**, **충북(6)**, **전북(10)**, 전남(6), **충남(9)**, 경남(11)

- 2025년

  : 107개 시군구 중 91개 지역 선정, 5,072명

▶ E-7-4R, F-4-R 쿼터배정 무관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체류자격

| | | |
|---|---|---|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 F-2-R |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본인 |
| 지역인재가족 | F-3-1R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신설) | E-7-4R |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숙련기능인력 본인 |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가족 (신설) | F-3-3R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R |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가족 동반이주한 외국국적동포 |
| 지역동포가족 | F-3-2R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미성년 양자 |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 | F-5-6R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유형별 개요

| |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
|---|---|---|---|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구감소지역 |
| 대상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br>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br>※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
| 주요 요건 |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br>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br>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br>※ E-7-4 점수제 적용 |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br>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
| 거주지 제한기간 | 5년<br>(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3년<br>(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계속<br>(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유형별 개요

| |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
|---|---|---|---|
| 취업 가능 업종 | 제한 없음<br>(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제한 없음<br>(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br>(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 |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
| 동반가족 | 허용<br>(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 |
| 배우자 취업 | 허용<br>(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 | |
| 자녀 취학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 |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F-2-R 제외대상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6)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예)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F-2-R 주요 요건

| 구분 | 요건 |
|---|---|
| 가. 학력 또는 소득 | ❶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br>❷ (소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인 자 |
| 나. 거주지 | 인구감소지역 내 추천 기초지자체 |
| 다. 취업 또는 창업 | ❶ (취업)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br>❷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
| 라. 품행단정 | 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마. 기본소양 | 한국어능력 4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F-2-R 가족초청 요건

-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 가족 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 |
|---|---|---|---|---|
| 금액(원/월) | 3,411,932 | 3,871,106 | 4,314,445 | 4,757,784 |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 **(배우자)** 주체류자격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기본요건 중 **'라. 품행단정 요건'** 충족(단, 해외범죄경력 제출은 불요)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모두 포함, 위반 시 주 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E-7-4R 대상

○ **(체류자격)**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B-9, B-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3개 체류자격 간 과거 및 현재 합법적 체류 기간 합산 가능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B-9, B-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E-7-4R 심사기준

○ 아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26. 12. 31.)**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 시 가족조정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 항목>

Ⓐ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 2,500만원~ | 3,000만원~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5,000만원~ |
|---|---|---|---|---|---|
| 50점 | 65점 | 80점 | 95점 | 110점 | 120점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 구 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
| 배 점 | 50 | 80 | 120 |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 구 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
| 배 점 | 40 | 60 | 30 | 10 |

< 가점 항목 >

| 추천 | | | | | | |
|---|---|---|---|---|---|---|
| ① | | ② | ③ | ④ | ⑤ | ⑥ |
| 중앙 부처 | 광역 지자체 | 고용 기업체 |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국내 운전면허증 |
| 30 | 50 | 50 | 20 | 20 | 20 | 10 |
|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 | | | |

< 감점 항목 >

|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 5 | 10 | 20 |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 5 | 10 | 15 |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E-7-4R 고용기업 요건

○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고용 가능 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내국인* 고용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
|---|---|
| 1명~5명 이하 | 3명 |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동포계열 사증체계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F-4-R 특징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F-4-R 취업범위 완화

| 직종 | 재외동포(F-4) | 지역특화동포(F-4-R) |
|---|---|---|
| 건설단순종사원 | X | O |
| 이삿짐 운반원 | X | O |
| 택배원 | X | O |
| 건물청소원 | X | O |
| 골프장캐디 | X | O |

* 단,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는 지역특화동포(F-4-R)와 취업활동 범위 동일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외국인 추천**

**가) 요건심사**

- **(지역우수인재)** 법무부 기본요건 및 지자체 개별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숙련기능인력)**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외국국적동포)** 동포 여부 및 거주지 확인

**나)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 조정 가능**

- 광역지자체(시・도)는 필요한 경우 기초지자체(시・군・구)별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추천 가능 여부 확인

**다) 동일 국적 추천 비율 제한**

-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지역특화 우수인재 추천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라) 중복지원 금지**

-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중복 지원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되므로 추천 시 본인에게 중복지원 여부 확인

**마) 추천서 유효기간(3개월) 내 자격변경**

- 추천서 발급으로 자격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격변경 신청하도록 안내

**바)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인원 차등 적용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 기준 최소 3명 ~ 최대 50명까지 허용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의의

### 지역특화 비자제도 가족 동반 : 정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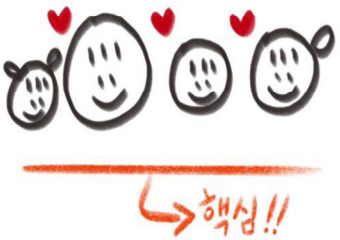


1.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을 허가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2.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시범지역으로 이주하는 재외동포 가족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3. 가족단위로 대한민국에 신규입국하여 시범지역에 거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와 가족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설명회 자료.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의의

### 지역특화 비자제도 혜택

**01. 동반가족 혜택**
- 해외거주하는 배우자 등 가족 초청
- 동반가족에게 거주비자 발급

**02. 취업허가/제한완화**
- 배우자 취업 허가
- 재외동포 단순노무 제한 일부 완화

**03. 지자체 정착 지원**
- 숙소 지원 , 언어 프로그램 등
- 지자체별 정착 지원 방안 마련

**04. 영주(F-5) 특례**
- 영주(F-5-6)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설명회 자료.

# 광역형 비자제도

## 개요

| | |
|---|---|
| 목적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 설계로 외국인 유치 및 지역 활성화 |
| 운영 기간 | 2025년 ~ 2026년( 2년 시범사업) |
| 공모 일정 | ('24.12.) 공모 시작 → ('25.1.~2.) 공모안 접수 → ('25.3.)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br>※ 12. 13. 광역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
| 대상 체류자격 | 유학(D-2) 및 특정활동(E-7) |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광역형 비자제도

## 요건

| | |
|---|---|
| 공통 요건 |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특화 설계 |
| 쿼터 제한 | 광역별 비자 사업 **쿼터** 및 **동일 국적 추천 비율*** 설정<br>* 동일 국적 추천 비율 **30% 이내** |
| 사회통합 정책 반영 | 선정 및 평가 시 사회통합 정책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 |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광역형 비자제도

## 대상 체류자격

- ✓ 정규 학위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 학업 충실도 및 졸업 후 취업 연계 고려
- ✓ 지차체 실정에 맞는 요건 설계

- ✓ E-7-1 ~ E-7-3 직종 대상
- ✓ 학력, 경력, 소득요건(최저임금 이상) 국민고용 보호 기준 등 설계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광역형 비자제도

## 관리 방안

### 연도별 평가

| | |
|---|---|
| 1. 쿼터 대비 충원율 | 2. 사회통합정책 참여도 |
| 3. 이탈률(불법체류율) | 4. 외국인 국적별 구성 비율 |

| | |
|---|---|
| **결과 활용** | 평가 점수에 따라 쿼터 배분 우대 또는 삭감 / 제도 중단 |
| **인센티브** |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쿼터 삭감 등 불이익 면제 |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인력종합과정. 법무부 강의자료 재인용.

# 감사합니다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포럼 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제1차 포럼**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인 쇄 2025년 4월 25일
발 행 2025년 4월 2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포럼 25-02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제1차
##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MRTC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